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7623
결재일자	2016.6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686호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홍미옥	김건희	정광희	고재풍	김경호	06/13 김기동
협 조					

**- 2016. 7. 1자 조직개편에 따른 -**  
**관련부서 예산이체 계획**



기 획 경 제 국  
 ( 기 획 예 산 과 )

- 2016. 7. 1자 조직개편에 따른 -

# 관련부서 예산이체 계획

---

2016. 7. 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, 폐지 및 팀 이관에 따라 예산이체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자 함.

## I 근 거

1. 지방재정법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)
2.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
3.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 제28조(예산의 전용,이용,이체)

## II 조직개편

### 1. 기구개편 현황

- 현행 : 5국 2담당관 1단 26과, 15동, 1소 4과 1지소, 1의회 168담당
- 변경 : 5국 1담당관 1단 28과, 15동, 1소 3과 1지소, 1의회 171담당

### 2. 주요내용

- 부구청장 직속 : 2담당관 7팀 ⇒ 1담당관 4팀
  - 정책홍보담당관폐지,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신설 등
- 행정관리국 : 5과 19팀 ⇒ 6과 23팀
  - 행정국으로 명칭변경, 디지털정보과 이관, 디지털정보과 통합 관제팀, 교육지원과 청소년팀, 독서진흥팀 신설 등
- 기획경제국 : 6과 1단 26팀 ⇒ 6과 1단 26팀
  - 기획홍보과로 명칭변경, 일자리경제과가 지역경제과와 일자리 정책과로 분과 등

- 복지환경국 : 5과 23팀 ⇒ 6과 25팀
  - 어르신복지과 신설,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, 청소과 음식물자원관리팀 신설 등
- 도시관리국 : 5과 21팀 ⇒ 5과 21팀
  -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계획과로,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로 명칭 변경 등
- 안전건설교통국 : 5과 21팀 ⇒ 5과 21팀
  - 안전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변경 등
- 보건소 : 4과 1지소 15팀 ⇒ 3과 1지소 15팀
  - 보건행정과 폐지,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, 보건지소 힐링센터 팀 신설 등

3. 시행일 : 2016. 7. 1

### Ⅲ 예산이체

#### 1. 이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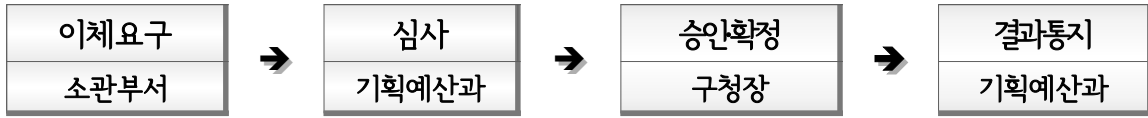
- 사업의 목적·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고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사항으로 의회심의 대상이 아님
- 사업단위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, 이체시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하며, 예산액으로 관리
  - ※ 다만,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의 인원편성에 따라 배분하여 통계목 단위 금액이체 가능

2. 이체대상 : 조직개편 대상 부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

### 3. 이체범위

- 재이체가 가능하고 이월 및 이·전용된 예산현액도 이체가능

### 4. 이체절차



### 5. 세입예산 이체방법

- 세입예산은 장·관·항·목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, 이체개념이 아니라 조직정보를 변경하는 차원(세입이체를 하면 차후 예산편성 시 자동으로 기정액이 신설부서로 이동됨)

### 6. 세출예산 이체방법

- **하나의 조직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된 경우**
  - 한 부서에서는 기존 정책·단위사업을 사용(내용의 변경 가능)
  - 다른 부서는 새로운 정책·단위사업을 신설(신규사업으로 처리)
  -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경우, A부서가 2개 이상의 A,B부서로 나누어지는 경우 A부서에서 기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은 A부서에서 관리함
- **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되는 경우**
  - 각각의 부서의 정책·단위사업을 통합부서에서 그대로 사용
- **A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B부서로 이체되는 경우**
  - 이체되는 사업의 일부가 A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도, 이체가 확정된 시점에는 이체받은 B부서에서 관리함
    - ※ 기존 부서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
  - A부서가 폐지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의 직무권한이 B부서로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이체받은 부서에서 기 집행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항까지 관리

## IV 추진일정

1. 2016. 6. 15.한 : 예산이체계획 시달
2. 2016. 6. 21.한 : 부서별 이체요구서 제출
3. 2016. 6. 24.한 : 부서별 이체예산 조정 · 심사
4. 2016. 6. 30.한 : 예산이체 확정 및 통지

## V 참고사항

1. 조직의 명칭만 변경되거나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는 이체 대상이 아님
2. 선행작업
  -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아 있는 일상경비의 잔액을 지출 원에게 반납하는 작업
  - 자금배정 완료되어 있지만 아직 집행이 되지 않는 자금배정 잔액에 대한 감배정처리
  - 하위사업 이체를 위한 상위사업 등록, 단위사업을 이체하려면 정책사업이 있어야 하고, 세부사업을 이체하려면 단위사업이 있어야 함.
3. 부서 협조사항
  - 총무과 : 실국 변동부서 GCC코드부여
  - 재무과
    - 신설부서 거래처 등록 및 회계관직 등록
    - 일상경비 반납 및 자금감배정 협조
  - 해당부서 : 이체요구서 작성 후 6월 21일까지 기획예산과 제출

- 2. 예산 이체 요구서 1부.
- 3. e호조 예산이체매뉴얼 1부. 끝.

[붙임1]

**지방재정법**

[시행 2016.6.30.] [법률 제13638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

**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(移替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무회계 규칙**

[시행 2015.9.8.] [서울특별시광진구규칙 제509호, 2015.9.8., 일부개정]

**제28조(예산의 전용, 이용, 이체)**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,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예산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과장, 관서의 장,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08.10.06>

### 예산 이체 요구서

\_\_\_\_\_ 국 \_\_\_\_\_ 과

(단위: 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지출액	예산잔액	금후소요액	요구액		사유
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				증	감	

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  
과장

기획예산과장 귀하

<기재요령>

- 1) 요구액을 요구 유형별로 변경사용·전용·이용·이체로 구분하여 기입한다.
- 2) 사유란에는 변경사용·전용·이용·이체 요구사유를 상세하게 기입한다.